

증평민속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

2010. 6. 11
[규칙 제167호]

일부개정 2011. 5. 27 규칙 제184호

일부개정 2015. 10. 2 규칙 제278호

(증평군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)

전부개정 2016. 12. 30 규칙 제307호

(제명개정)

일부개정 2019. 12. 26 규칙 제372호

(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)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증평민속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단체관람) ① 단체관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관람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평군수(이하 “군수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박물관장(이하 “관장”이라 한다)은 원활한 관람질서를 위하여 단체관람 신청자의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3조(사용허가 범위) ① 군수는 박물관 시설을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한다.

1. 문예진흥을 위한 각종 공연, 전시 및 문화행사
2. 미술, 공예, 서예 등 교육 및 실습
3. 각종 문화체험 활동
4. 그 밖의 지역향토문화행사

② 제1항의 사유로 박물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,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.

제4조(유물의 구입절차) 「증평민속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20조에 따른 유물의 구입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9. 12. 26>

1. 유물구입 기본계획 수립
2. 구입대상 분야 선정
3. 유물구입 공고
4. 매도신청서 접수

5. 유물평가위원 위촉 및 평가위원회 심의
6. 구입예정 유물 사진 공개
7. 매매계약

제5조(유물의 감정) ① 군수는 조례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유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유물의 소유 또는 기증자에게 유물의 감정평가 실시 사실을 알리고, 유물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유물을 증평민속체험박물관(이하 “박물관”이라 한다)에 보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유물감정평가를 받은 후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유물감정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제6조(매도신청) ① 박물관에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유물매도신청서(별지 제6호서식)
2.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(유물의 천연색 사진, 별지 제7호서식)
3. 유물매도위임장(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)
4.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(문화재 매매업자에 한정함)
5. 신분증명서 사본(개인인 경우)
6. 그 밖의 매도에 필요한 자료

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
2. 「문화재보호법」 제103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유물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
3. 구입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

제7조(유물의 기증)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기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12. 26>

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기증 받은 유물을 기록·관리한다.

1. 유물 기증 증서 (별지 제9호서식)

2. 유물 기증 원부 (별지 제10호서식)

제8조(유물의 반환) ① 군수는 조례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유물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 중에서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유물 반환서를 작성하여 매도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조례 제22조에 따라 기증 받은 유물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도 별지 제11호서식의 유물 반환서를 작성하여 기증을 의뢰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
제9조(운영규정) 이 규칙의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(2016. 12. 30 규칙 제307호 전부개정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9. 12. 26 규칙 제372호,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
일괄개정 규칙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증평민속체험박물관 단체관람 신청서

신 청 자	성 명								
	소속 및 직위								
	연 락 처	사무실	핸드폰						
	E-mail								
단체관람	단체이름								
	주 소								
	연 락 처								
	연 령	(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)							
	관람인원	총 명							
관 랐 일	년 월 일 요일	시							
인 술 자	이 름								
	소속 및 직위								
	연 락 처								
그 밖의 요구사항									
개인정보 활용동의	<table><tr><th>수집항목</th><th>이용목적</th><th>보유기간</th></tr><tr><td>성명, 소속 및 직위 연락처, 연령대</td><td>· 교육 일정 및 내용협의 · 박물관 홍보</td><td>1년</td></tr></table>			수집항목	이용목적	보유기간	성명, 소속 및 직위 연락처, 연령대	· 교육 일정 및 내용협의 · 박물관 홍보	1년
	수집항목	이용목적	보유기간						
성명, 소속 및 직위 연락처, 연령대	· 교육 일정 및 내용협의 · 박물관 홍보	1년							
본인은 박물관 단체관람을 위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박물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. 동의함 ☐ 동의안함 ☐									

「증평민속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 신청자 (서명 또는 인)

증 평 군 수 귀 하

[별지 제2호서식]

증평민속체험박물관 사용허가(변경)신청서

단 체 명		대표자성명		생년월일	
단 체 의 소 재 지 또 는 대 표 자 주 소			연락처	자 택	
				휴대전화	
행 사 의 명 칭					
행 사 (변 경) 의 내 용					
사 용 (변 경) 기 간 및 시 간	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(일 시간)			참석 인원	명
사 용 시 설 및 설 비	기본시설				
	부속시설				
사 용 료 유 감 면 사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(100퍼센트 감면)		군수가 후원하는 행사 (50퍼센트 감면)		비 고
					증빙자료 첨부
비 고	첨부 1. 행사계획서 1부 2. 감면 증빙서(해당될 경우 첨부) 1부. 3. 그 밖의 행사관련 이행신고필증 사본(해당될 경우 첨부) 부				
「증평민속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 가(변경)를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: 성명 : (서명 또는 인)					
증 평 군 수 귀하					

[별지 제3호서식]

증평민속체험박물관 사용허가서

사 용 자	단체명		대표자성명		생년월일	
	주 소					
사용목적 (행사명 등)						
사용기간		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				
사용시설	기본시설					
	부속시설					
사 용 료	계		건물시설		부속시설	
기타사항 (허가조건)						
「증평민속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. 년 월 일 증 평 군 수 직인						

[별지 제4호서식]

보 관 증					
연번 :					
신청자 인적사항	성 명 (상 호)		전화	자택 (사무실)	
				휴대전화	
	주 소		생년월일 (법인·사업자 등록번호)		
유물명칭	※ 별첨 목록 가능				
신 청 서 접수번호		보관일시			
1. 「증평민속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제5조에 따라 박물관에 보관한 유물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. 2. 이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「증평민속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에 따라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여 드리며, 유물의 반출·입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.					
년 월 일 증 평 군 수 직인					

[별지 제6호서식]

유물매도신청서							
접수번호 :							
매 도 신 청 자	성 명 (상 호)		전 화	자택 (사무실) 휴대전화			
	주 소		생년월일 (법인·사업자 등록번호)				
신청 유물 목록							
연번	유물명칭	시대	크기	구조특징	출처	요구액	비고
1. 「중평민속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. 2. 위 유물은 도굴품(도난품)이 아님을 확인하며, 도굴품(도난품)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·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,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. 년 월 일 매도자 : (인) 증 평 군 수 귀하							
구 비 서류	1.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(유물의 천연색 사진 (3×5) 2매) 1부 2. 유물매도위임장 1부(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) 3.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(문화재 매매업자에 한정함) 4. 신분증명서 사본 1부(개인인 경우)						수수료
							없음

[별지 제7호서식]

매도대상 유물 명세서

명칭		수량	
크기		시대	
소장자		요구액	금원 (₩)
소장경위			
내용			
사진			

[별지 제8호서식]

유 물 기 증 서						
번호 :						
기증자 인적사항	주소			전화		
	성명 (상호)		생년월일 (사업자등록번호)			
특이사항						
기 증 유 물 목 록						
연번	유물명칭	시 대	수 량	크 기	구조특징	출 처

1. 위와 같이 「중평민속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군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.

2.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성 명 (인)

증 평 군 수 귀하

[별지 제9호서식]

제 호

유물 기증 증서

주 소 :

기관·단체명 :

성 명(대표자) :

귀하(단체·기관)께서 증평민속체험박물관에 소중한 유물을 기증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, 기증하신 ○○ 등 ○○점의 유물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자료로 보존하여 증평 군민의 문화예술 발전과 교육·연구 자료로 활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.

년 월 일

증 평 군 수 직인

(유물목록 별첨)

[별지 제10호서식]

유물 기증 원부

- ☐ 기증일시 :
☐ 기 증 자 :
 ○ 성 명 :
 ○ 주 소 :
 ○ 연락처 :

연번	명 칭	수 량	형 상	사진첨부란	비고
합 계					

[별지 제11호서식]

유물 반환서					
인수자 인적사항	주소			전 화	
	성명 (상호)		생년월일 (사업자등록번호)		
반환사유					
반 환 유 물 목 록					
연 번	유물명칭	시 대	수 량	크 기	비고
위 유물을 「증평민속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제8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.					
년 월 일					
인수자 성명 (서명 또는 인)					
증 평 군 수 귀 하					